

임실군의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35호

임실군의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6.

임실군의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가. 현수막 생산·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1급 발암물질 생성, 온실가스 배출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제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탄소중립,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다.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협의 등 : 건설과
- 라. 입법예고 : 2024. 8. . ~ 2024. 8. .
- 마. 붙임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내 기관, 사업장, 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